



Department of Treasury

통지번호	CP75
과세 연도	2009
통지 일자	2010 년 10 월 15 일
사회복지보장번호(SSN)	
귀하의 발신자 ID	
연락처	
페이지 1 / 3	

귀하의 2009 Form 1040 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 요청

귀하의 세금 보고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정보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환급액 중에서 저소득 근로세 환급(EIC) 부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2010 년 11 월 15 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사 항목이 부인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 현재 심사 중인 항목 목록을 검토한 후, 세금 보고서 기재 내용을 입증할 서류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봉된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 3 페이지에 있는 답변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2010년 11월 15일까지 우송하거나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 그 때까지 서류를 준비할 수 없으면 [redacted] 번으로 전화하여 대체 방안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증빙 서류가 필요한 항목

아래 항목에 대한 자격 확인용:

아래 목록은 증빙 서류가 필요한 항목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세 환급 Form 1040

- 동봉한 Form 886-H-EIC '저소득 근로세 환급 청구용 증빙 서류'를 검토하십시오.
- 귀하의 자녀가 저소득 근로세 환급 자격에 필요한 관계, 연령 및 주거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내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부양 가족 Form 1040

- 동봉한 Form 886-H-DEP '부양가족 공제 증빙서류'를 검토하십시오.
- 해당 부양가족이 있음을 나타내는 요청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납세자 구분 Form 1040

- 세금 보고서에 납세자 구분을 세대주로 지정한 경우, 동봉한 Form 886-H-HOH '세대주 납세자 구분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를 검토하십시오.
- 귀하가 세대주임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스케줄 C Form 1040

- 동봉한 Form 11652 '설문조사 및 증빙 서류', Form 1040 '스케줄 C (사업 이익 또는 손실)'를 검토하십시오.
- 귀하에게 근로 소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Form 11652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통지번호	CP75
과세 연도	2009
통지 일자	2010년 10월 15일
사회복지보장번호(SSN)	[REDACTED]
귀하의 발신자 ID	[REDACTED]
연락처	[REDACTED]
페이지 3 / 3	

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

2010년 11월 15일까지 증빙 서류를 우송/팩스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 항목을 부인하고, 귀하의 세금 보고서 변경내용이 표시된 심사
보고서를 귀하에게 발송합니다.

다음 단계

-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최소한 30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정보가 세금 보고서 내용을 입증할 경우, 환급액을 보내고 귀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 제공된 정보가 세금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안된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심사 보고서를 발송해드리며, 여기에는 추가 납부
세액과 과태료 및 이자 (해당 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참고 사이트: www.irs.gov/cp75.
- 동봉한 문서와 귀하의 이의 신청권을 설명하는 '심사 절차' (간행물
3498-A)를 검토하십시오.
- 세무 양식, 지침 또는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irs.gov를 방문하거나
1-800-TAX-FORM (1-800-829-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은 IRS와 연방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또한 납세자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납세자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합니다. 간행물 4134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은 해당 지역의 클리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납세 보호 서비스(TAS)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상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원하거나, IRS의
체계나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IRS 소속의 독립적 조직입니다. TAS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TAS의 사례 접수 무료전화 [REDACTED]번 또는
TTY/TDD [REDACTED]번으로 전화하여 TAS에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irs.gov/advocate를 참조하십시오.
- 이 통지서는 잘 보관하십시오.
-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답변 양식

이 양식을 작성하여 2010년 11월 15일까지 우송하거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동봉한 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주소가 투명창에 보이도록 하십시오.

답변서는 일반 우편, 택배, 우선/속달 서비스, 배달증명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서 보내십시오. 배달 시 서명이 필요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연락처 정보 제공

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redacted]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irs.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기본 전화번호	a.m. p.m. 통화하기 좋은 시간	a.m. p.m. 보조 전화번호

1. 입증 서류로 대응할 항목을 표시하십시오

서류 동봉

동봉한 서류는 본인의 2009년 세금 보고서 내용을 입증합니다 (해당 항목은 모두 선택하십시오).

- ☐ 저소득 근로세 환급 Form 1040
- ☐ 스케줄 C Form 1040
- ☐ 부양가족 Form 1040
- ☐ 납세자 구분 Form 1040

2. 이 답변 양식을 송부하십시오

귀하의 답변 양식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해당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보내주십시오. 자체 봉투를 이용할 경우, 서류를 이 양식에 적힌 주소로 보내거나 팩스 [redacted] 번(무료 전화 아님)으로 전송하십시오.